
화장품 광고자문 기준 및 해설서

2025.

해설서 제·개정 이력

화장품 광고자문 기준 및 해설서

제·개정번호	승인일자	주요 내용
1	2023.	화장품 광고 자문 기준 및 해설서 제정
2	2025.	화장품 광고 자문 기준 및 해설서 개정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민원인안내서)」 개정에 따른 반영)

본 기준 및 해설서는 「화장품법」과 관련하여 광고자문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광고는 그 특성상 사회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법률적 판단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 해설서에 사용된 광고 사례는 관련 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입니다.

목 차

I. 화장품 광고자문	화장품 광고자문 화장품 광고자문위원회
II. 화장품 광고자문 기준	목적 적용범위 자문기준 (일반 기준, 세부 기준, 실증 대상)
[별첨]	화장품 광고자문 신청 및 자문 절차

I. 화장품 광고자문

1. 화장품 광고자문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설립 요청에 따라 1983년 화장품 광고심의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표시·광고 등에 대한 업계의 자발적 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29조(자발적 관리의 지원)에 의거하여 화장품 광고물에 대한 자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광고자문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 개편과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여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새롭게 출범되어 자율심의기구 내 광고자문위원회와 광고 모니터링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광고자문은 법적사전심의가 아닌 자율적 자문으로써 광고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광고자문을 받은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광고 관련 화장품 감시에서 즉각적인 처분 이전에 시정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장품 광고자문 대상

-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는 화장품 광고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광고자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광고자문 제외 대상〉

- 화장품의 표시·기재사항(전성분 표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 방송광고(영상물) [단, 제작 전 콘티(시나리오) 등은 대한화장품협회 광고자문 가능]
 - ※ 방송광고(영상물)에 대해서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한국방송협회(지상파TV), 한국 케이블TV방송협회(케이블)에서 심의 수행

2.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광고자문위원회

화장품 광고물에 대한 자문은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내 화장품 광고자문 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며 광고자문위원회는 광고 학계, 소비자단체, 과학, 법률, 산업계 등에서 참여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광고자문위원회 업무

-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한 광고 내용에 대한 자문
-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한 화장품 광고 모니터링
- 화장품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후 법령 위반 내용에 대한 시정 요청

□ 광고자문위원회 운영

- 매월 2회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원칙

1. 목적

이 기준은 화장품 광고를 자문함에 있어 이에 관한 구체적 자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광고자문에 대한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경쟁촉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적용범위

본 해설서에 사용된 광고 사례는 관련 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 해설서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어나 문구 자체만이 아닌 전체 문맥과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자문 기준

□ 일반 기준

- (1) 화장품 광고는 다양한 사회 환경의 변화, 급속한 과학 기술의 발달 등을 실시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광고 개개의 사례별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며, 단어나 문구 자체만이 아닌 광고의 전체 문맥과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2) 「화장품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화장품법」 제2조(정의) 등에 따라 화장품의 적용 부위 및 기능, 생리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① 적용 부위 : 화장품은 피부, 모발, 손톱, 발톱, 입술, 외음부 등 인체의 외부에 적용되는 제품으로,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섭취 및 주입 혹은 인체의 다른 부위(콧구멍이나 내부생식기의 점막 등)에 사용되는 것은 화장품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 ② 화장품의 기능 :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

아니며, 인체에 경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적용 부위를 청결 및 청정하게 하고, 향기를 주고, 외관(용모)을 가꾸고, 보호하며,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단,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는 광고 표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심사 또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화장품 광고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표시·광고의 범위 등)과 [별표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준수사항 등을 따라야 한다.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

- 「화장품법」 제14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등에 따라 영업자 및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인 연구결과(예: 과학논문인용색인(SCI 또는 SCIE),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자료 등)에 따라 관계 전문가집단에서 상당한 정도 합의가 된 사실의 표현이어야 한다.
- 과학적 증명자료는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과학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증명 또는 합의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 다만, 과학적인 연구 결과라도 법적 기준 및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윤리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유용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여야 한다.

(5) 허위·과대 광고나 부당한 광고 표현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품에 대한 광고 시에는 허위·과대 및 부당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세부 기준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할 수 없다.

①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하는 표현

-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물품을 의미하므로, 질병(또는 질병의 증상)을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할 수 있다는 광고와 질병(또는 질병의 증상)을 회복(복구) 시키거나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다음과 같은 표현은 할 수 없다.

<광고 할 수 없는 표현 예시>

- 항암효과가 있다, 피부암을 치료(예방)한다.
- 항염 효과·진통효과가 있다.
- 질염을 치료·예방해준다.
- 아토피, 소양증에 효과가 있다.
- 모낭충을 없애준다.
- 통증 경감에 효과가 있다.
- 찰과상, 화상을 치료·회복시켜준다.
- 이노작용에 도움이 된다.
- 건선 피부에 효과가 있다.
- 가려움, 가려움증을 완화, 개선, 해결한다.
- 기저귀 발진의 증상을 없애준다.
- 갱년기 증상 및 홍조, 홍반을 개선, 제거한다.
- ○○○의 흔적을 없애준다, 제거한다.
- 뾰루지를 개선한다.

<<예시 설명>>

- 항암, 항염, 치료·예방 관련 표현
 - ☞ 항암, 항염 효과가 있거나 질병(또는 질병의 증상)을 치료·예방한다는 표현은 의약품의 효능·효과이므로 할 수 없다.
- 아토피, 소양증에 효과가 있다.
 - ☞ 아토피 또는 소양증은 가려움을 주증세로 하는 피부 질환을 일컫는 말로 질환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표현은 의약품 오인 표현이므로 할 수 없다. 다만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수분 부족 현상을 완화한다, 수분을 보충해준다.’ 등의 일반적인 보습 효과 표현은 할 수 있다.

- 모낭충을 없애준다.

☞ 모낭충은 피지선과 모낭에 기생하는 진드기로 모낭충을 없애주는 것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이다. 모발 관련 표현 중 ‘두피의 피지에 의한 지성 두피 청결에 도움을 준다, 두피와 모발의 노폐물을 제거하여 과다한 피지 분비의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등의 표현은 할 수 있다.

- 찰과상, 화상을 치료·회복시켜준다.

☞ 찰과상, 화상을 치료·회복시켜주는 것은 의약품의 효능·효과에 해당되므로 화장품에서 광고할 수 없다. 화장품의 기능이 없이 쿨링과 온열감만을 표방하는 제품은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제품 사용으로 인한 단순한 일시적 쿨링 또는 온열감을 제공한다는 표현은 소비자의 구매에 도움을 주는 정보 전달 수준으로 표현해야 한다.

- 건선 피부에 효과가 있다.

☞ 건선은 만성 염증성 피부병으로 건선 피부의 개선·완화 또는 건선 피부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은 할 수 없다. 다만 피부에 수분을 보충하는 등 화장품에서의 일반적인 보습 효과와 관련된 표현은 할 수 있다.

- 가려움, 가려움증을 완화, 개선, 해결한다.

☞ ‘가려움, 가려움증을 완화, 개선, 해결한다.’의 표현은 피부의 가려움 증상을 경감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표현할 수 없다. 다만,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이거나 ‘보습을 통해 피부건조에 기인한 가려움의 일시적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은 할 수 있다.

- 기저귀 발진의 증상을 없애준다.

☞ 기저귀 발진 증상을 제거하거나 치유하는 것과 관련된 표현은 의약품의 효능·효과이므로 할 수 없다. 다만, ‘기저귀가 닿는(접촉) 부위에 보습을 준다.’ 등의 표현은 할 수 있다.

- 갱년기 증상 및 홍조, 홍반을 개선, 제거한다.

☞ 갱년기 증상 및 홍조, 홍반을 개선하거나,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화장품의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의 효능·효과이므로 표현 할 수 없다. 다만 메이크업을 통해 일시적으로 홍조, 홍반을 가려준다는 표현은 할 수 있다.

- 000의 흔적을 없애준다, 제거한다.

☞ 여드름이나 흉터의 흔적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화장품의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의 효능·효과이므로 표현 할 수 없다. 다만 메이크업을 통해 일시적으로 000의 흔적을 가려준다는 표현은 할 수 있다.

- 뽀루지를 개선한다.

☞ 뽀루지를 개선하는 것은 화장품의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의 효능·효과이므로 표현 할 수 없다. 다만 메이크업을 통해 일시적으로 뽀루지를 가려준다는 표현은 할 수 있다.

②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표현

-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주는 것과 관계된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표현은 할 수 없다.

<광고 할 수 없는 표현 예시>

-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켜준다.
- 근육을 이완시켜준다.
- 체내 림프순환을 촉진시킨다. 혈액을 순환시킨다.
- 관절, 림프선 등 피부 이외 신체 특정 부위에 사용하여 의학적 효능·효과를 나타낸다.
- 세포를 재생시킨다.
- 세포 성장을 촉진한다.
- 세포 활력을 증가시킨다, 세포/유전자(DNA)를 활성화시켜준다.
- 유익균의 균형을 보호해준다.
- 몸매개선, 신체일부를 날씬하게 한다.
- 체형을 변화시켜준다.
- 다이어트/체중감량에 효과(도움)있다, 피하지방을 분해시킨다.
- 얼굴 윤곽을 개선한다,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V라인으로 만들어준다.
- 가슴에 탄력을 주거나 확대시킨다.
- 살균·소독 효과가 있다.
- 해독작용을 해준다.
- 체내 노폐물을 제거한다.
-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디톡스, detox)
- 면역을 강화시켜준다.
- 항진균·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
-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다.
- 상처로 인한 반흔을 제거 또는 완화한다.
- 흉터를 제거해준다.
- 피부를 재생시킨다.
- 피부의 상처나 질병으로 인한 손상을 치료하거나 회복 또는 복구한다.
- 질내 산도를 유지·조절한다.

- 호르몬 분비 등 내분비 작용을 촉진시킨다.
- 땀 발생을 억제한다.
- 속눈썹, 눈썹이 자란다.
- 메디슨(medicine), 드럭(drug), 코스메슈티컬, 치유 등을 사용한 의약품의 효능 표현
- 원료 관련 설명 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사용

<<예시 설명>>

-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켜준다.
 - ☞ 화장품을 직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켜준다는 것은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므로 표현 할 수 없으나 ‘향을 바르거나 뿌려서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 등 향으로 인한 효과는 표현 할 수 있다.
- 세포를 재생시킨다, 세포 성장을 촉진한다, 세포 활력을 증가시킨다, 세포/유전자(DNA)를 활성화시켜준다.
 - ☞ 세포 활성 등과 관련된 표현은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므로 표현 할 수 없으며, 원료 관련 설명 시에도 세포 활성과 관련된 표현은 할 수 없다. 다만, 시험/검사와 관련된 표현으로써, 세포를 재생, 성장 촉진, 활력을 증가시킨다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In Vitro Test의 세포 실험 명칭/결과는 사용 할 수 있다.
- 몸매개선, 신체일부를 날씬하게 한다, 체형을 변화시켜준다.
 - ☞ 신체를 변화시키거나 개선시키는 등의 표현은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므로 할 수 없으나 메이크업을 통해 일시적으로 날씬하게 보이게 하는 표현은 할 수 있다.
- 다이어트/체중감량에 효과(도움)있다, 피하지방을 분해시킨다.
 - ☞ 체중을 감량시키는 다이어트 효과 및 지방 분해 관련 효과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므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인체적용시험 자료로 입증 시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표현은 할 수 있다.
- 얼굴 윤곽을 개선한다,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V라인으로 만들어준다.
 - ☞ 윤곽을 변화시키거나 개선시키는 등의 표현은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므로 할 수 없으나 색조 효과를 주어 윤곽을 선명하게 연출하는 것은 표현 할 수 있다.
- 가슴에 탄력을 주거나 확대시킨다.
 - ☞ 가슴에 탄력을 주거나 가슴의 크기를 확대시키는 것은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므로 표현할 수 없으나 ‘가슴 보습’ 등의 일반적인 보습 관련 효능·효과는 표현 할 수 있다.
- 살균·소독 효과가 있다.
 - ☞ ‘살균·소독’은 균을 사멸시키는 것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이다. 다만

‘항균’은 균의 서식을 막아주는 것으로 인체세정용 제품의 특성상 물과 함께 씻겨 제거되는 의미의 균 제거 표현은 인체세정용 제품(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등)에 한해서 인체적용시험 자료로 입증 시 표현 할 수 있다.

- 해독작용을 해준다,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디톡스, detox), 체내 노폐물을 제거한다.

☞ 피부 독소 및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는 등의 표현은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현으로 광고할 수 없으나 ‘피부 노폐물 및 모공(속) 노폐물을 제거한다.’ 등의 노폐물 제거 관련 표현은 가능하다.

-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다.

☞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항알레르기 효과는 의약품의 효능·효과이므로 표현할 수 없으나 ‘알레르기(반응) 테스트 완료’, ‘하이포알러제닉 테스트 완료’ 등의 표현은 시험(테스트)했다는 내용에 한하여 인체적용시험 자료로 입증 시 사용해야 하고, 알레르기를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 피부를 재생시킨다.

☞ 피부 자체를 재생시킨다는 표현은 약리학적 효능효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표현할 수 없으며, 원료 관련 설명 시에도 피부 재생인자 함유 등 피부 재생 능력을 설명할 수 없다. 다만, ‘피부 턴오버주기 관리, 유지’ 등의 표현은 할 수 있다.

- 피부의 상처나 질병으로 인한 손상을 치료하거나 회복 또는 복구한다.

☞ 피부를 재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부의 상처나 질병으로 인한 손상을 치료하거나 회복 또는 복구한다는 표현은 약리학적 효능효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표현할 수 없으나, ‘피부장벽의 손상 개선에 도움을 준다.’ 등의 표현은 인체적용시험 자료로 입증 시 사용할 수 있다. 리페어(repair) 문구의 경우, 앞뒤 단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금지 표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광고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을 때 상처나 질병과 연관된 금지표현과 동일한 수준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 질내 산도를 유지·조절한다.

☞ 화장품의 적용 부위와 관련하여 피부, 모발, 손톱, 발톱, 입술, 외음부 등이 아닌 내부생식기의 점막, 질 등에 적용되어 작용한다는 표현은 화장품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표현이므로 화장품에서는 표현할 수 없다.

- 호르몬 분비 등 내분비 작용을 촉진시킨다.

☞ 호르몬 분비, 호르몬 기능 등과 관련된 효능·효과는 생리활성 관련 표현으로 화장품 광고 시 할 수 없다.

- 땀 발생을 억제한다.

☞ ‘겨드랑이, 손발의 다한증(땀 과다증)에 효능’이 있는 제품은 의약품인 발한제,

지한제로 분류하고 있으며, ‘땀 발생 억제를 통한 액취의 방지’는 의약품 액취방지제의 효능·효과이므로 화장품 광고 시 할 수 없다. 다만, 데오도란트를 사용하여 ‘체취를 방지한다.’ 또는 ‘ 좋지 않은 향을 덮어준다.’ 등의 체취 방지 관련 표현은 가능하며,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바디 클렌저 등)에는 ‘소취’, ‘체취 제거’ 등의 표현은 할 수 있다.

- 속눈썹, 눈썹이 자란다.

☞ 속눈썹, 눈썹 자체가 자라거나 성장한다는 표현(발모)은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현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연출 효과를 통해 속눈썹, 눈썹을 일시적으로 길게 보이도록 하거나 물리적인 볼륨감과 세팅효과를 주는 표현은 할 수 있다.

- 메디슨(medicine), 드럭(drug), 코스메슈티컬, 치유 등을 사용한 의약품의 효능 표현

☞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제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는 광고는 할 수 없다. 피부를 의미하는 ‘더마(derma, 피부)’ 관련 표현은 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문맥에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원료 관련 설명 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 ‘OO추출물은 상처 치유에 사용, OO성분의 항염 작용 등, 피부 재생에 효과적인 OO 성분’ 등 상기에 언급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처 치유’, ‘항염’, ‘피부 재생’ 등의 표현은 제품이 아닌 원료 관련 설명 시에도 할 수 없다.

(2)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할 수 없다.

① 기능성화장품 관련 표현의 일반 기준

- 기존 기능성화장품의 유형은 미백 기능성화장품,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 3가지였으나, 2017년 5월 30일 모발의 색상 변화, 체모 제거,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 튜브로 인한 붉은 선을 없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추가되어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통지서 또는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 할 광고는 하지 말아야 하며, 심사 받거나 보고한 제품의 경우에도 기능성화장품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표현은 할 수 없다.

○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얇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강한 햇빛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 피부장벽(피부의 가장 바깥 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한다)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
- 트살로 인한 붉은 선을 얇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반화장품에서 할 수 없는 표현과 기능성화장품이지만 심사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 내용이 다르게 표현되어 광고 할 수 없는 표현 등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광고 할 수 없는 표현 예시>

- (일반화장품에서)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 (일반화장품에서) 주름을 완화한다.
- (일반화장품에서) 자외선을 차단해준다.
- (일반화장품에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
- (일반화장품에서) 트살 관리에 효과가 있다.
- (일반화장품에서) 피부장벽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을 완화한다.
- (일반화장품에서) 미백 고시성분 알부틴이 함유된 제품이다.
- (일반화장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성분 레티놀이 함유되어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 (일반화장품에서) 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OO 원료가 함유되었다.
- (일반화장품에서) OO 원료가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 기능성 심사(보고)된 원료가 아닌 다른 부원료(ex 특허성분)가 해당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표방하는 표현

<<예시 설명>>

- (일반화장품에서)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주름을 완화한다, 자외선을 차단해준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
☞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아니한 제품에 미백, 화이트닝(whitening), 주름(링클, wrinkle) 개선, 자외선(UV)차단, 염모(탈염·탈색 포함), 제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 튜브로 인한 붉은 선을 없게 하는 데 도움 등 관련 표현은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표현으로 할 수 없다.
- (일반화장품에서) 미백 고시성분 알부틴이 함유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성분 레티놀이 함유되어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더라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아니한 제품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미백 고시성분 OO 함유’ 등의 표현은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표현으로 할 수 없다.
- (일반화장품에서) 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OO 원료가 함유되었다, OO 원료가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일 경우 원료 관련 설명 시에도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표현 할 수 없다.
- 기능성 심사(보고)된 원료가 아닌 다른 부원료(ex 특허성분)가 해당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표방하는 표현
☞ ex)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품목보고 제품으로 그 효능·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원료는 ‘아데노신’ 임에도 불구하고, 보고되지 않은 다른 부원료(ex 특허성분)를 통해 ‘주름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등 해당 기능성을 표방한 표현은 할 수 없다.

② 기능성화장품 관련 표현의 세부 기준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 받거나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광고할 수 있으며, 광고표현에 따라 기능성화장품과 일반화장품에서의 광고 표현 범위가 달라진다.

가. 미백 기능성화장품

<미백 기능성화장품에서 가능한 표현 예시>

-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

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얇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 기미, 주근깨 완화에 도움을 준다.
- 기미와 주근깨 같은 다크 스팟을 케어한다.
- 화이트닝에 도움을 준다.

<<예시 설명>>

-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얇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정하는 미백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관련 표현이므로 할 수 있다.

- 기미, 주근깨 완화에 도움을 준다. 기미와 주근깨 같은 다크 스팟을 케어한다.

☞ 기미, 주근깨 완화 및 케어 등의 표현은 미백 기능성화장품에서 표현 할 수 있다. 다만 기미, 주근깨가 아닌 ‘검버섯 완화에 도움을 준다, 검버섯을 케어한다.’ 등의 표현은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현이므로 할 수 없다.

- 화이트닝에 도움을 준다.

☞ 미백을 의미하는 화이트닝 관련 표현은 할 수 있다.

다음의 표현은 일반화장품에서도 표현 가능하다.

- 피부의 빛·윤기 등의 개념으로 ‘피부를 밝게(브라이트닝), 환하게, 화사하게, 맑게 케어 한다.’ 등의 광고 표현 및 메이크업을 통한 기미, 주근깨를 가려준다는 표현은 일반화장품에서도 할 수 있다.

- 피부에 투명함을 선사한다.
- 피부를 밝고 화사하게 한다.
- 피부의 브라이트닝을 케어한다.
- 윤기 있고 매끄러운 피부 톤을 선사한다.
- 고유한 빛을 복돋아준다.
- 메이크업을 통해 기미, 주근깨를 가려준다.

나.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서 가능한 표현 예시>

-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다.

- 안티링클(Anti-wrinkle)
-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 안티에이징 케어

<<예시 설명>>

-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정하는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 관련 표현이므로 할 수 있다.
- ‘안티에이징’, ‘항산화’, ‘항노화’ 등 피부노화 완화 관련 표현의 경우 인체 적용시험자료 또는 인체외시험자료로 입증이 필요한 실증 대상 표현이지만,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서 주름개선 효능·효과를 통한 피부노화 완화 표현의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자료를 근거로 표현할 수 있다.

다음의 표현은 일반화장품에서도 표현 가능하다.

- 피부에 탄력을 부여한다 등의 광고 표현은 일반화장품에서도 할 수 있으며, ‘안티에이징, 피부 노화를 완화시킨다.’ 등의 표현은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이 아니어도 인체적용시험자료 또는 인체의 시험자료로 입증 시 표현 할 수 있다.

-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 (인체적용시험자료 또는 인체의 시험자료로 입증 시) 피부노화를 완화시킨다, 안티에이징, 피부노화 징후를 감소시켜준다. 항산화, 항노화

다.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에서 가능한 표현 예시>

- 강한 햇빛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다.(자외선 차단이 아닌, 태닝제품도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임)
-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 UVA, UVB를 차단한다.
- (내수성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워터프루프, 워터레지스턴스 자외선차단제
- 자외선차단으로 인한 광노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

<<예시 설명>>

- 강한 햇빛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정하는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관련 표현이므로 할 수 있다.
-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정하는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관련 표현이므로 할 수 있다.
- 물과 땀에 강하다, 워터프루프, 워터레지스틴스 자외선차단제
☞ 내수성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에서 ‘워터프루프(water proof), 내수성(water resistance)’ 표현 시,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자료로 입증하여 표현 할 수 있다.
- ‘안티에이징’ 등 피부노화 완화 관련 표현의 경우 인체적용시험자료 또는 인체외시험자료로 입증이 필요한 실증 대상 표현이지만, 자외선차단, 주름개선 등 기능성 효능·효과를 통한 피부노화 완화 표현의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자료를 근거로 표현할 수 있다.

라.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성화장품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성화장품에서 가능한 표현 예시>

-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킨다.
- 탈염(脫染)·탈색(脫色)의 기능을 가진다.

<<예시 설명>>

-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킨다, 탈염(脫染)·탈색(脫色)의 기능을 가진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정하는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관련 표현이므로 할 수 있다.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염모제는 기능성화장품이나,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일반화장품으로 다음의 표현은 가능하다.

- 헤어 틴트, 헤어 컬러스프레이 등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염모제, 탈염·탈색용 제품)이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킨다.’ 등의 표현은 할 수 있다.

- (헤어 틴트, 헤어 컬러스프레이 등 일반화장품에서)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킨다.
- (헤어 틴트, 헤어 컬러스프레이 등 일반화장품에서) 모발을 일시적으로 착색시킨다.

마.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성화장품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성화장품에서 가능한 표현 예시>

- 체모를 제거한다.
- 체모를 부드럽게 제거한다.
- 체모를 녹여 부드럽게 제거한다.

<<예시 설명>>

- 체모를 제거한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정하는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이므로 표현 할 수 있다.

☞ 제모제를 사용한 체모의 제거는 일시적인 것이므로, 체모를 영구적으로 제거하거나 영구적 성장을 억제한다는 표현은 할 수 없다.

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에서 가능한 표현 예시>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
- 탈모 증상을 완화한다.
- 탈모 증상을 관리/케어한다.
- 탈모 두피를 관리/케어한다.
- 탈모를 완화한다.
- 모발의 밀도를 유지시켜준다.
- 빠지는 모발을 감소시킨다.

<<예시 설명>>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정하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이므로 표현 할 수 있다.

- 탈모 증상을 완화한다, 탈모 증상을 관리/케어한다.

☞ 탈모 증상을 치료하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닌 탈모 증상을 완화하거나 관리/케어한다는 표현은 할 수 있다.

- 탈모 두피를 관리/케어한다.

☞ 탈모 증상을 치료하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닌 탈모 두피를 관리/케어한다는 표현은 할 수 있다.

- 빠지는 모발을 감소시킨다.

☞ 탈모 증상과 유사한 의미인 빠지는 모발 감소에 대해서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으로서 심사받은 자료에 관련 시험 자료가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기능을 별도로 실증한 경우에 표현할 수 있다.

다음의 표현은 일반화장품에서도 표현 가능하다.

- 탈모 증상과 관련된 표현이 아닌 두피 및 모발의 청결·미화 관련된 일반적인 광고 표현과 모발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부드러움이나 탄력을 주는 표현 (예 : ~탄력을 주어 모발을 건강하게 한다.) 등은 일반화장품에서 할 수 있다.
- ‘모발 손상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인체적용시험자료 또는 인체외시험자료로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표현할 수 있다.
-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데 도움을 준다.’ 등의 표현의 경우, 「두발용 화장품의 비듬, 가려움 완화 평가법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입증자료 구비 시 표현할 수 있다.

- 두피의 피지에 의한 지성 또는 지루성 두피 청결에 도움을 준다.
- 두피와 모발의 노폐물을 제거하여 상쾌함을 준다.
- 모발을 굵게/두껍게 보이게 한다.(코팅, 컨디셔너 등 물리적인 작용에 한함)
- 모발의 끊김을 방지한다.
- 두피 및 모발을 청결하게 하여 비듬 방지에 도움을 준다.
-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데 도움을 준다.
- 모발의 손상을 개선

특히 다음의 표현은 탈모 치료제 등의 의약품으로 오인이 될 수 있는 표현이므로 화장품 광고 시 표현할 수 없다.

- ▶ 탈모 또는 탈모 증상을 치유/치료한다.
 - 탈모 또는 탈모 증상을 치유/치료하는 것은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므로 표현 할 수 없다.
- ▶ 모발의 굵기/두께를 증가시킨다, 발모, 육모, 양모에 도움을 준다.
 - 모발의 굵기/두께를 증가시키거나 모발이 새로 자라는 등의 표현은 발모제 등의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표현 할 수 없다.
- ▶ 탈모(증상)를 방지한다, 탈모(증상)를 예방한다.
 -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닌 탈모(증상) 방지, 탈모(증상) 예방과 관련된 표현은 할 수 없다.

사.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에서 가능한 표현 예시>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여드름성 피부를 관리/케어한다.

<<예시 설명>>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정하는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관련 표현이므로 할 수 있다.
- 여드름성 피부를 관리/케어한다.
 - ☞ 여드름성 피부를 치료하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닌 관리/케어한다는 표현은 할 수 있다.

다음의 표현은 일반화장품에서도 표현 가능하다.

- 여드름 개선과 연관되지 않고 각질, 피지, 건조함, 자극 등의 피부 고민을 관리한다는 의미의 광고 표현은 일반화장품에서 가능하며, 인체적용시험자료로 입증 시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 다만, 동 표현은 여드름 피부에 적용 시 상태가 개선된다는 것이 아니다.

- (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함) 피지와 노폐물을 깔끔하게 제거하여 피부를 관리/케어한다.
- (논코메도제닉 테스트 자료 등 인체적용시험자료로 입증 시)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 표현을 할 수 있다.

특히 다음의 표현은 여드름 치료제 등의 의약품으로 오인이 될 수 있는 표현이므로 화장품 광고 시 표현 할 수 없다.

- ▶ 여드름성/여드름 피부를 치유 또는 치료한다, 여드름을 제거한다, 여드름을 극복/개선한다.
 - 여드름/여드름성 피부를 치유/치료하는 것 또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의약품의 효능·효과이므로 표현 할 수 없다.
- ▶ 여드름을 예방한다.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것이 아닌 여드름 예방 관련 표현은 할 수 없다.
- ▶ 여드름균을 사멸시킨다.
 - 여드름균을 사멸시킨다는 표현은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할 수 없다.

아.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은 안전성, 유효성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에서 가능한 표현 예시>

-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 피부장벽 기능 회복으로 인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예시 설명>>

-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을 완화한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정하는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관련 표현 이므로 할 수 있다.

다음의 표현은 일반화장품에서도 표현 가능하다.

- 피부 장벽 회복을 통한 가려움 완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보습을 통한 건조함을 방지하여 가려움의 일시적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은 할 수 있다.

- 보습을 통해 피부건조에 기인한 가려움의 일시적 완화에 도움

다만, 피부 질환인 “아토피” 질병 명칭 및 아토피 관련 표현은 할 수 없다.

- ▶ 아토피성/아토피 피부를 치유 또는 치료한다, 아토피를 제거한다, 아토피를 극복/개선한다.
 - 아토피성/아토피 피부를 치유/치료하는 것은 의약품의 효능·효과이므로 표현할 수 없다.
- ▶ 아토피를 예방한다, 아토피 증상을 완화한다.
 - 아토피 예방, 증상 완화와 관련된 표현은 할 수 없다.

자.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얹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얹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안전성, 유효성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얹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에서 가능한 표현 예시>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얹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얹게 해준다.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예시 설명>>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얹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얹게 해준다.
 -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정하는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얹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관련 표현이므로 할 수 있다.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붉은 튼살을 완화한다.
 -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닌 감소, 완화 관련 표현은 할 수 있다.

다음의 표현은 의약품 등으로 오인이 될 수 있는 표현이므로 화장품 광고 시 할 수 없다.

- ▶ 튼살을 제거한다, 튼살로 인한 흉터를 제거한다, 튼살을 개선한다.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흰 선을 나타내는 튼살 관련 표현은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는 표현이므로 할 수 없다.
- ▶ 튼살을 방지한다.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얇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튼살 방지와 관련된 표현은 할 수 없다.

(3)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할 수 없다.

① 화장품 정의에서의 사용 목적, 적용 부위, 사용 방법 등을 벗어난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한다.

<광고 할 수 없는 표현 예시>

- 필러(filler), 지방볼륨 형성·생성 효과가 있다.
- 보톡스 효과가 있다.
- 레이저, 카복시 등 시술 관련 표현
-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
-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시 및 광고
- 먹을 수 있다.

<<예시 설명>>

- 필러(filler), 지방볼륨 형성·생성 효과가 있다, 보톡스 효과가 있다.
 - ☞ 필러, 보톡스 효과 등의 표현은 화장품 효능·효과를 벗어나므로 할 수 없으나 색조제품에서 메이크업을 통해 입체감 있게 연출하거나 빈 곳을 채워주는 의미의 표현은 할 수 있다.
- 레이저, 카복시 등 시술 관련 표현
 - ☞ 레이저, 카복시 등 시술 효과와 관련된 표현은 할 수 없지만, 시술 전후 화장품의 일반적인 진정 등의 효능·효과로서의 표현은 할 수 있다.
-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
 - ☞ ‘여성크림, 성 윤희작용, 쾌감을 증대시킨다, 질 보습, 질 수축 작용’, ‘성기 사진 등의 여과 없는 게시’, ‘남녀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은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므로 할 수 없다.
- 먹을 수 있다.

② 의료인 등의 추천·보증 등으로 제품의 신뢰와 연관 짓는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화장품의 광고에서는 표현 할 수 없다.

<광고 할 수 없는 표현 예시>

- OO 아토피 협회가 인증한 화장품
- OO 의료기관의 첨단기술의 정수가 탄생시킨 화장품
- OO 대학교 출신 의사가 공동개발한 화장품
- OO 의사가 개발한 화장품
- OO 병원에서 추천하는 안전한 화장품
- 의사 사진 등의 이미지와 함께 의료인/의료기관의 제품 개발 및 추천 오인 표현
- 의료 기구, 십자가 이미지 등 의료 관련 도안 등
- 병원용, 병원전용, 피부과전용, 피부과시술용, 약국용, 약국전용 화장품

<<예시 설명>>

- OO 대학교 출신 의사가 공동개발한 화장품
☞ ‘의사’ 등이 언급된 표현은 소비자 오인 우려 표현이므로 할 수 없으나 ‘OO 대학교와 공동개발한 화장품’ 과 같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표현은 사실에 의거하여 할 수 있다.
- OO 의사가 개발한 화장품
☞ 회사의 대표자가 의사인 경우라도 의료인이 개발하거나 추천하는 등의 표현은 할 수 없다.
- 의사 또는 의료 기구, 십자가 사진 등의 이미지와 함께 의료인/의료기관의 제품 개발 및 추천 표현
☞ 화장품 광고에 의사 사진, 병원 사진, 의료기구, 십자가 도안 등을 사용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서 개발하거나 추천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이미지 및 그 광고는 사용할 수 없다.
- 병원용, 병원전용, 피부과전용, 피부과시술용, 약국용, 약국전용 화장품 관련 표현
☞ ‘병원용’, ‘피부과전용’ 등과 같은 표현은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지정, 사용하고 있다고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어 해당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해당 화장품이 ‘병원’, ‘약국’ 등에서 단순 유통 사실을 의미하는 경우, 의사 추천 등을 의미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한다.

<광고 할 수 없는 표현 예시>

-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무첨가, free 無 등 포함)
* 예: 無(무) 스테로이드, 無(무) 벤조피렌 등
- 부작용이 전혀 없다.
- 일시적 악화(명현현상)가 있을 수 있다.
- 동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인증을 받은 제품임(단, 기능성화장품 심사 보고 표현 제외)
- 원료 관련 설명 시 완제품에 대한 효능·효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 피부 나이 n세 등 기간을 의미하는 단위) 감소 또는 어렵진다는 표현
* 예: 피부나이 10년 감소, 피부나이 5세 어려짐, 피부나이 -3살 등
- 제품 사용방법을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현
* 예: 바늘, 니들, 마이크로니들, 미세침, MTS(Microneedle Therapy System), 외음 부세정제의 '이너케어', '질 내 주입/사용' 등
- 특정인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기원 표현
-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 예: 줄기세포화장품, stem cell, 0억 세포 등
- 인체에서 유래한 특정성분(엑소좀, 리포좀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 예: 엑소좀 화장품, 엑소좀 등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대한화장품협회)」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천연(Natural)', '유기농(Organic)' 관련 표현

<<예시 설명>>

-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무첨가, free 포함)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배합금지 원료)를 정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화장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사항이다. 이에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할 경우 해당 제품에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해당 표현은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여 광고 할 수 없다. 다만, 배합금지 원료 외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 oo' 표현은 시험분석자료 등(특정성분이 타 물질로의 변환 가능성이 없으면서 시험으로 해당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시험성적서 등 활용 가능)으로 입증

시 할 수 있다.

- 부작용이 전혀 없다.

☞ 화장품 성능 및 효능·효과에 대한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이를 부정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다.’ 고 단정하는 표현은 할 수 없다.

- 일시적 악화(명현현상)가 있을 수 있다.

☞ “일시적 악화(명현현상)”과 같은 표현은 화장품이 특정한 치료 효과를 가질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형성할 수 있다.

- 동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인증을 받은 제품임(단, 기능성화장품 심사 보고 표현 제외)

☞ 화장품의 경우 “허가” 나 “인증”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기능성화장품일 경우 “심사” 또는 “보고” 라는 용어로 정확히 사용해야 한다.

- 원료 관련 설명 시 완제품에 대한 효능·효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 특정 원료의 효능·효과에 대해 광고할 시 해당 화장품(완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완제품을 기준으로 관련 실증자료를 구비하여 광고해야 한다.

- 피부 나이 n세 등 기간을 의미하는 단위) 감소 또는 어려워진다는 표현

☞ ‘피부 나이 10년 감소’, ‘피부 나이 5세 어려짐’, ‘피부 나이 -3살’ 과 같은 표현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어 금지된다. 대신 ‘피부 노화 지수’ 로 대체하여 표현할 수 있다.

- 제품 사용방법을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현

☞ ‘바늘’, ‘니들’, ‘마이크로니들’, ‘미세침’, ‘MTS’ 용어 등을 사용하여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하여 의료기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는 금지된다. 또한 외음부세정제를 ‘질 내 주입·사용’ 방법으로 안내하는 것은 금지된다.

- 특정인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기원 표현

☞ 특정인의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표현은 할 수 없으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 3]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불특정인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표현 할 수 있다.

-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 줄기세포 화장품, stem cell 등은 일반적으로 화장품 광고 시 표현 할 수 없지만,

식물줄기세포 함유 화장품의 경우에는 ‘식물줄기세포 함유’ 등의 표현을 할 수 있다. 단, ‘캘러스(callus)배양액추출물’의 경우, 모든 캘러스(callus)가 미분화세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캘러스배양액추출물’을 ‘줄기세포배양액추출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불가하다.

- 인체에서 유래한 특정성분(엑소솜, 리포솜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 인체에서 유래한 특정 성분(엑소솜, 리포솜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인체 유래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금지된다. 다만 인체에서 유래하지 않은 ‘식물 엑소솜’, ‘유유 엑소솜’ 등의 표현은 가능하다.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대한화장품협회)」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천연(Natural)’, ‘유기농(Organic)’ 관련 표현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안내하고 있다. 해당 안내서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천연(Natural)’, ‘유기농(Organic)’ 관련 표현을 할 수 있다.

☞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대한화장품협회 광고자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라는 제목으로 해당 안내서를 확인할 수 있다.

- 비건 관련 표현

☞ 「화장품 비건(VEGAN) 표시·광고 안내서(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화장품의 ‘비건’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비건’ 표시·광고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안내하고 있다. 해당 안내서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비건’ 표현을 할 수 있다.

☞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대한화장품협회 광고자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화장품 비건(VEGAN) 표시·광고 안내서」라는 제목으로 해당 안내서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절대적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한다.

<광고 할 수 없는 표현 예시>

- 즉시 주름이 사라진다,
- 즉각적인 화이트닝 효과를 볼 수 있다.

<<예시 설명>>

• 절대적 표현

- ☞ ‘즉시 주름이 사라진다’, ‘즉각적인 화이트닝 효과를 볼 수 있다.’ 등과 같이 화장품의 효능·효과가 인체에 즉각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은 할 수 없다.
- ☞ ‘최고, 최상, 최대, 최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화장품의 효능·효과와 관련하여 최상급으로 과장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절대적 표현은 객관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 한 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최초’ 등의 표현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⑤ 사용 전·후 사진, 사용 후기 인용 시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사용 전·후(Before & After) 광고는 화장품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소비자 오인이 없도록 표시·광고해야 한다.
- 사용 후기는 소비자의 제품구매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 후기를 광고에 직접 활용할 경우 화장품법 상 부당한 광고로 간주할 수 있는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⑥ 특허 관련 표현 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특허 등록한 제품 또는 원료(성분)의 제조방법, 조성물 등에 대한 특허의 명칭 및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소비자 오인 우려 표현 또는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등은 표현할 수 없다.

아울러, 공신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는 민간환경단체 등의 기준(예: EWG 그린등급 원료 사용, EWG 1등급 성분사용)을 근거로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광고 또한 할 수 없다.

<광고 할 수 없는 표현 예시>

- OO는 지방축적 억제용 화장료로 특허 받은 성분들로 구성
- 알러지 아토피방지 미국특허 OO호, 주름살 제거 습진 여드름 세계특허 OOO호
- 아토피성 피부염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발모 조성물 특허성분

<<예시 설명>>

- OO는 지방축적 억제용 화장료로 특허 받은 성분들로 구성, 알러지 아토피방지 미국특허 OO호, 주름살 제거 습진 여드름 세계특허 OOO호, 아토피성 피부염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발모 조성물 특허성분

☞ 특허의 명칭 및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거나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는 내용을 인용하는 표현은 할 수 없다.

(4)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누구나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내용은 광고 할 수 있다.

<예시>

- 햇살 같은 피부
- 산소 같은 여자

③ 화장품 표시·광고 주요 실증 대상

광고 표현	실증 자료 기준
•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 • 항균(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함) •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 붓기 완화 • 다크서클 완화 • 피부 혈행 개선 • 피부장벽 손상의 개선에 도움 • 피부 피지분비 조절 • 미세먼지 차단, 미세먼지 흡착 방지	▶ 인체적용시험 자료
• 모발의 손상을 개선한다.	▶ 인체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외 시험자료
• 피부노화 완화, 안티에이징, 피부노화 징후 감소, 피부노화지수 감소	▶ 인체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외 시험자료 ▶ 자외선차단 주름개선 등 기능성효능효과를 통한 피부노화 완화 표현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자료를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 피부노화지수의 단위는 'n(세 등 기간을 의미하는 단위)'으로 표기 불가
• 콜라겐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 효소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 주름 완화 또는 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서 이미 심사받은자료에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기능을 별도로 실증한 자료
• 기미, 주근깨 완화에 도움	▶ 미백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자료
• 빠지는 모발을 감소시킨다.	▶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으로서 이미 심사받은 자료에 근거가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기능을 별도로 실증한 자료
•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관한 내용 <<예시>> 수분감 30% 개선효과 피부결 20% 개선 2주 경과 후 피부톤 개선	▶ 인체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외 시험자료
• 시험·검사와 관련된 표현 <<예시>> 피부과 테스트 완료 ○○ 시험검사기관의 ○○ 효과 입증	▶ 인체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외 시험자료

광고 표현	실증 자료 기준
• 제품에 특정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 00’ 표현 ※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 제외	▶ 시험분석자료 - 단, 특정성분이 타 물질로의 변환 가능성이 없으면서 시험으로 해당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 시험성적서 등 활용
• 타제품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예시>> “자사제품 00보다 지속력이 5배 높음”	▶ 인체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외 시험자료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광고
• ISO 천연·유기농 지수 표시·광고 <<예시>> 천연지수 00%(ISO 16128 계산 적용) 천연유래지수 00%(ISO 16128 계산 적용) 유기농지수 00%(ISO 16128 계산 적용) 유기농유래지수 00%(ISO 16128 계산 적용)	▶ 해당 완제품 관련 실증자료 - 이 경우 ISO 16128(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산이라는 것과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도 함께 안내 필요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안내서) III. 주의사항 8 참고
※ 광고에 인체적용시험 결과 인용 시 시험기관, 시험대상, 시험기간 등 명시 권장 ※ ‘임상’은 소비자 오인 우려 표현이므로 ‘인체적용시험’으로 명시 요망	

[별첨] 화장품 광고자문 신청 및 자문 절차

1. 화장품 광고자문 신청 및 자문 절차

화장품 광고자문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화장품 광고자문 신청

①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광고자문



② 광고자문 → 광고자문 신청 게시판에서 신청서 작성

The image shows the '광고자문 신청' (Advertising Consultation Application) form. The header includes the K-CIA logo and navigation links: 광고자문 이용안내, 광고자문 신청 (highlighted with a red box), 광고자문 처리현황 및 결과, 공지사항. The main banner features a person writing and the text '광고자문 신청'. Below the banner is a navigation bar with '광고자문 신청' selected. The form itself has the title '광고자문 신청' and includes the following fields and options:

- 회원사 여부: ☐ 회원사, ☒ 비회원사
- 이메일: [text input] @ [text input] [직접입력 ▼]
- 비밀번호: [text input]
- 비밀번호 확인: [text input]
- 기존 신청 이력 불러오기

▶ 신청서 작성 요령

• 자문/재자문 선택

☞ 자문: 처음 자문 신청 시 또는 초기 자문에서 광고자문 결과가 부적합인 시안을 수정하여 재신청 시

재자문: 초기 자문에서 광고자문 결과가 조건부적합인 경우(1회에 한해 재자문 가능)

* 재자문의 경우, 자문 결과를 받은 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1회 재자문 가능(수수료 면제)

• 광고주명, 신청사명, 담당자 정보 등 입력

☞ 광고자문 결과 확인 시 사전에 입력한 E-mail과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회원사여부 선택

☞ 협회회원사: 회원사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홈페이지 상단 로그인 이용) 시 자동 체크

비회원사: 로그인 과정 없이 신청서 작성

* 회원사는 웹페이지 가입과 무관하며, 협회에 입회비와 월회비를 납부하는 회사를 의미함

• 광고매체 선택

• 제품명 입력

• 기능성화장품 여부 선택

☞ 자문 대상 제품이 기능성화장품일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 또는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를 반드시 첨부문서에 등록해야 자문이 가능합니다.

• 첨부문서 등록

☞ 첨부문서1: 광고시안 이미지 파일 등록(1개의 이미지 파일만 인식 가능)

첨부문서2~4: 광고자문 내용 관련 입증 자료 등록

* 입증 자료의 세부 내용은 “2. 화장품 광고자문 신청 시 제출 자료” 참고

* 입증 자료가 3개 이상일 경우, 압축파일로 등록

• 자문수수료 안내

☞ 광고주가 협회 회원사인 경우에는 1건(품목)당 50,000원, 비회원사인 경우에는 1건당 100,000원입니다. 단, 초기 자문에서 조건부 적합으로 통보받은 경우, 재자문 신청은 한 달 이내 1회에 한하며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가능하며, 여러 품목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각각 나누어 신청하셔야 하며, 접수번호 한 개가 한 건으로 처리됩니다.

자문 신청 내용	자문 수수료
* 품목 수가 여러개일 경우	ex) 스킨, 로션, 크림 3품목 각각 신청하여 → 회원사: 총 15만원, 비회원사: 총 30만원
* 목적에 따라 광고물의 내용이 다를 경우	ex) ○○스킨에 대하여 A안(인터넷 상세페이지용), B안(리플렛용) 각각 신청하여 → 회원사: 총 10만원, 비회원사: 총 20만원

② 화장품 광고자문 신청

① 신청서 접수 및 마감(처리상태: **결재대기**)

광고자문회의 개최 전 주 목요일까지 접수 완료된 건에 한하여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며, 마감일 이후의 접수서류는 차기 회의에 상정됩니다.

* 광고자문회의 개최일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 광고자문에서 확인

KCA 광고자문

광고자문 이용안내 광고자문 신청 광고자문 처리현황 및 결과 공지사항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대한민국 화장품,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 광고의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사전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24차 회의
접수기간 : 2020-12-04 ~ 2020-12-17
회의 개최일 : 2020-12-23

2021년 제1차 회의
접수기간 : 2020-12-18 ~ 2020-12-31
회의 개최일 : 2021-01-06

신청하기

② 회의 개최(처리상태: **접수완료**)

사무국 예비 검토 후, 광고자문위원회 개최

③ 결과 통보(처리상태: **결과확인**)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 광고자문 → 광고자문 처리현황 및 결과 게시판에서
결과 확인

- 광고자문 신청서 작성 시 입력한 E-mail 주소와 비밀번호 입력

2. 화장품 광고자문 신청 시 제출 자료

자문 받고자 하는 화장품 광고 내용과 관련된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면 자문 시 참고하여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광고 표현에 대한 자문 시, 해당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자문 신청 시 제출 자료>

광고 표현	요청 자료	비 고
기능성화장품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품목 보고서	- 자문 신청 시 반드시 제출 요망 *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자료 구비 후 자문 신청해주시기 바람
○○ 원료 함유	제품표준서의 '원료성분의 규격 및 함량' 자료	- 성분명과 광고명이 다를 경우 추가 자료 제출 요망 - 함량 부분을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 원료 2% 함유'의 표현이 있다면 해당 원료에 대한 '%' 공개하여 제출
○○ 테스트 완료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외 시험 자료	
특허 및 상표 관련	특허등록증, 상표등록증	특허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특허의 발명의 명칭이 화장품 효능·효과를 벗어나는 표현이라면 광고하지 말 것
비건, 천연, 유기농 등 인증 관련	해당 기관 인증서	End of validity(유효기간) 확인하여 제출
원산지 관련 내용 - ○○산 원료	원산지증명서	
'무(無) ○○' 표현	시험분석자료	시험분석자료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시험성적서 제출

※ 보도 자료 또는 검색 사이트 백과사전 등의 자료는 근거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 광고 자문 신청한 제품명과 근거 자료의 제품명 일치 요망

※ 외국 자료는 원문 전문(full paper) 및 국문요약문(주요부분발췌) 제출 요망